

부산항 도선사의 승선·하선구역 운영세칙

2006. 8. 23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06- 90 호
2010. 7. 19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0- 111호
2012. 7. 3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2- 145호
2015. 3.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5- 44 호
2023. 9. 2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3- 187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「도선법」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·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「도선법」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(이하 "선장"이라 한다)이 도선사를 승선·하선시켜야 하는 승선·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.

제3조(도선사의 승선·하선구역) ①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·하선구역(이하

"승선·하선구역"이라 한다)은 [별표 1] 및 [별표 2] 와 같다.<개정 2015.03.10>

② 부산항의 기상악화(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및 그에 준하는 기상상태를 포함한다)시의 승선·하선구역(이하 "기상악화시의 승선·하선구역"이라 한다)은 [별표3] 및 [별표4]와 같다.<개정 2015.03.10>

[제3항 삭제 <2023.09.21>]

[제4항 삭제 <2023.09.21>]

제3조의2 (도선사의 승선·하선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·하선) ① 제

3조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·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·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선박 수리를 목적으로 조선소에 입·출항하는 경우
2.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선박 또는 선박의 구조적 특성상 규정된 승선·하선 구역에서 안전하게 승선·하선할 수 없는 경우
3. 환자이송·인명 안전 등 긴급한 경우
4. 태풍 내습·강풍 등으로 기상·해상 상태가 급변한 경우
5. 그 밖에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·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·하선해야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.

[본조 신설 2023.09.21]

제2장 기상악화시의 도선사의 승선·하선구역 운영

제4조(적용대상 선박) 북항의 기상악화 시의 승선·하선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·하선시킬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.<개정 2015.03.10>

1. 외항여객선·크루즈선 및 총톤수 30,000톤 미만의 화물선
2. 군함, 위험물 등 적재화물의 특성상 긴급히 양·적하해야 하는 선박

제5조(운영시기) ① 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기상악화 시의 승선·하선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기상악화 시 승선·하선구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선사와 협의하여 [별표1]의 북항, 감천항 또는 부산항 신항의 승선·하선구역 중 어느 하나의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·하선시킬 수 있다. 단, 이 경우 총톤수 30,000톤 이상의 화물선을 포함한다.

③ 선장이 제2항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 또는 하선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또는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해야 한다.<개정 2023.09.21>

제5조의2(승선·하선구역에서 승선·하선하지 못할 경우 도선행위 금지)

도선사는 제5조2항에 따라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·하선구역에서 승선·하선하지 못할 경우 「도선법」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

도선구 밖으로 동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 또한 그 구간에서 동행한 선박에 대하여 도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선장은 동행한 도선사에게 도선행위를 요구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된다.

제6조(통보 및 기록 등 관리·유지) ① 제4조에 따른 선박의 선장이 기상악화 시의 승선·하선구역에서 해당 도선사를 승선·하선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항도선사회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.<개정 2023.09.21>

② 부산항도선사회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및 기록 등을 관리·유지해야 한다.

제7조(삭제) <2023.09.21>

제8조(삭제) <2015.03.10.>

제9조(재검토 기한) 청장은 이 세칙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<신설 2023.09.21>

부 칙(2006. 8. 23)

이 세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3.09.21>

부 칙(2010. 7. 19)

이 세칙은 2010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7. 30)

이 세칙은 201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3. 10)

이 세칙은 2015. 4. 1.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 9. 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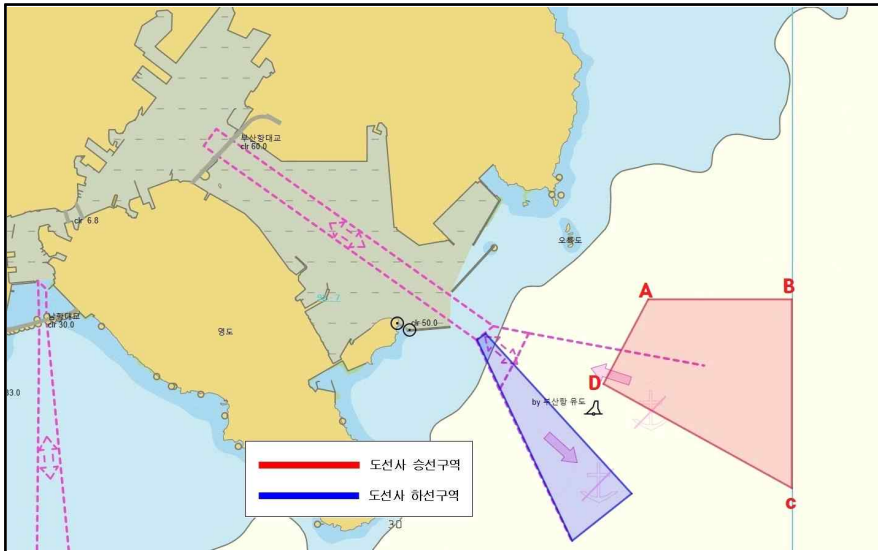
이 세칙은 2023. 10. 1.로부터 시행한다.

부산항 도선사의 승선·하선 구역(제3조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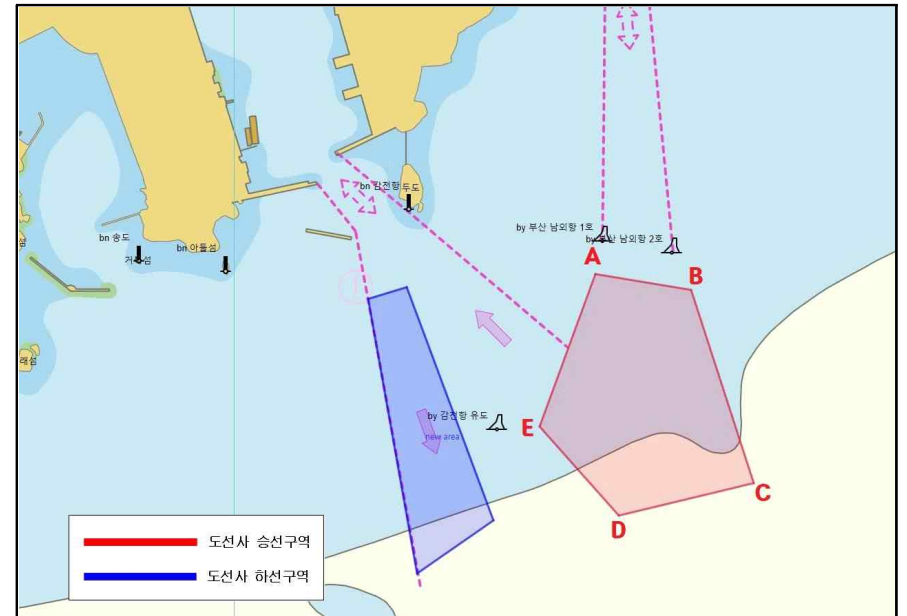
구분	승 선 구 역	하 선 구 역
북 항	A. 35-05-00N, 129-08-27E B. 35-05-00N, 129-10-00E C. 35-03-20N, 129-10-00E D. 35-04-15N, 129-07-58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	조도 방파제로부터 0.3마일 밖 출항항로 해역
감천항	A. 35-02-34N, 129-01-50E B. 35-02-30N, 129-02-19E C. 35-01-42N, 129-02-38E D. 35-01-34N, 129-01-57E E. 35-01-56N, 129-01-33E 상기 5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	남방파제로부터 0.3마일 밖 출항항로 해역
신 항	A. 34-57-36N, 128-49-50E B. 34-57-21N, 128-49-06E C. 34-58-48N, 128-48-27E D. 34-58-59N, 128-49-10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	A. 34-59-33N, 128-48-07E B. 34-59-23N, 128-47-28E C. 35-00-23N, 128-47-10E D. 35-00-44N, 128-47-37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

부산항 도선사의 승선·하선구역 위치도(제3조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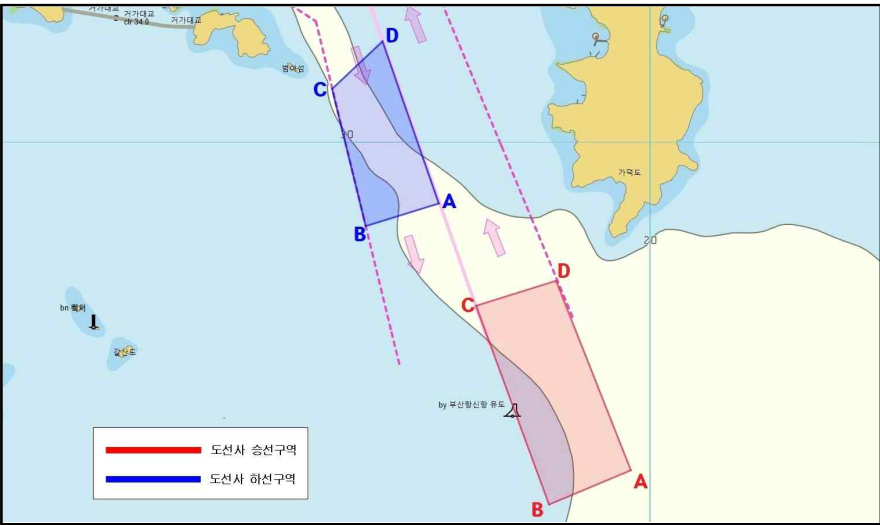
1. 북항



2. 감천항



3. 부산항 신항



[별표 3] <개정 2023.09.21>

기상악화시의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·하선구역(제3조관련)

구 분	승 선 구 역	하 선 구 역
북 항	A. 35-05-36N, 129-05-21E B. 35-05-19N, 129-05-51E C. 35-05-14N, 129-05-47E D. 35-05-31N, 129-05-17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(No.2 Buoy로부터 내측 0.5마일내의 구간)	A. 35-05-30N, 129-05-07E B. 35-05-13N, 129-05-36E C. 35-05-18N, 129-05-40E D. 35-05-35N, 129-05-11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 (No.3 Buoy로부터 외측 0.5마일내의 구간)
신 항	A. 34-59-12N, 128-49-04E B. 34-59-00N, 128-48-22E C. 35-00-45N, 128-47-37E D. 35-01-07N, 128-48-05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	A. 35-02-14N, 128-46-58E B. 35-02-27N, 128-46-14E C. 35-03-31N, 128-46-47E D. 35-03-31N, 128-46-58E 상기 4지점을 연결하는 해역 내

1. 북향

